실명제 사업내역서

사업실명제 등록번호	2017-05	담당부서 작성자	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평가사업관리팀 박유진 행정원 (02-2174-2728/better@neca.re.kr)				
사 업 명	신의료기술평가사업(보건복지부 위탁사업, 고유사업)						
사업개요 및 추진경과	적이고 공정하는 발전 촉진에 기 - 신의료기술평가 평가에 수반되는 제55조, 신의료의 수 전기간 : 201 이 총사업비 : 2,5% 이 주요내용 -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계 관련 자료의 수 전경과 - 2006. 10. : 「의 - 2007. 04. : 「신 - 2007. 04. : 신의 - 2013. 07. : 신의 - 2013. 11. : 원스 - 2014. 04. : 제한 - 2014. 04. : 신의 - 2014. 04. : 신의	작성자 박유진 행정원 (02-2174-2728/better@neca.re.kr) 신의료기술평가사업(보건복지부 위탁사업, 고유사업) ○ 추진배경 -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국가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 및 관련 의료기술 발전 촉진에 기여(의료법 제53조) -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 수집·조사 등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(의료법 제55조,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) ○ 추진기간 : 2017.1.1. ~ 2017.12.31.(계속) ○ 총사업비 : 2,590백만원 ○ 주요내용 - 신의료기술평가(원스탑서비스 제도, 제한적 의료기술평가,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, 의료기기 허가·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등 포함)관련 자료의 수집·조사, 위원회 운영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					

	- 2016. 02. : 의료기기 허가·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시업 실시 - 2016. 07. : 의료기기 허가·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본사업 실시 - 2016. 11. :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범위 확대 실시						
사업수행자 (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)	 ○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- 최초 입안자 :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 김석현 - 최종 결재자 : 원장 이영성 ○ 사업 관련 						
	구분	성명	직급	수행기간	담당업무 (업무분담 내용)		
	본부장	김석현	선임 연구위원	'17.1.1.~현재	신의료기술평가사업 총괄		
	팀장 (평가사업 관리팀)	이상만	책임 행정원	'17.1.16.~현재	신의료기술평가사업 관련 행정		
	팀장 (평가사업1팀)	최원정	부연구 위원	'17.1.1.~현재	신의료기술평가수행 및 위원회 운영		
	(평가사업2팀)	전미혜	부연구 위원	'17.1.1.~현재	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		
	팀장 (고객소통 제도개선팀)	김주연	부연구 위원	'17.1.1.~현재	고객소통 및 제도개선		
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	 ○ 보건복지부(소관부처) -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: 과장 이스란, 사무관 장태영, 주무관 안제현 ○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자 - 의료기관 및 비의료기관(의료기회사, 제약회사, 학회 등) 						
추진실적	○ 2007. ~ 2016. : 신의료기술평가 2,121건 신청, 이 중 시장진입 결정 총 1,067건(신의료기술 인정 728건(34.3%), 기존기술 인정 339건(16.0%))						

- 2007. 04. :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(보건복지부령) 제정
- 2011. 07. : 「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(보 건복지부 고시) 제정
- 2014. 07. : 고시 개정 및 '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서비스' 시행
- 2014. 04. : 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(보건복지 부 예규) 제정
- 2014. 04. : 「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」(보건복지 부 고시) 제정 및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시행
- 2015. 04. :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 개정 (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통보일 365일→280일 단축)
- 2015. 09. :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 개정 (평가 유예대상 및 평가 절차 마련 등)
- 2015. 09. : 「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 개 정 (원스탑 서비스 적용 대상 확대)
- 2016. 03. : 「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」 개정 (제 한적 의료기술 평가 운영 관련)
- 2016. 05. : 「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 개 정 (체외진단검사, 유전자 검사 등 검사분야 평가 기간 단축)
- 2016. 07. : 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 제정 (보건복지부 고시)
- 2016. 07. : 「의료기기 허가·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정 (보건복지부 고시)
- 2016. 11. :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 개정 (제한적 의료기술 사용 범위 확대 관련)
- 2016. 12. : 「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」 개정 (제한적 의료기술 사용 범위 확대 관련)